



의안번호	제156호
------	-------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21. 10. 14.

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56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10. 14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가 대두되고 이에 따른 행정처리의 법률 자문 또한 증가하고 있어, 능력있는 고문 변호사의 연임제한을 해제하고 자문수당을 증액하여 내실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우리시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능력있는 변호사의 연임제한(안 제2조)을 해제하고 수당 30만원에 자문 1건당 10만원 추가 지급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3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1. 9. 10. ~ 2021. 9. 3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4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정액 자문수당: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 금액)
2. 법률 자문수당: 1건당 1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 금액)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안자	참여예산실장	홍 민 기
	의회법무팀장	이 미 경
	담당자	조 수 연 (746-508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	<p>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연임할 수 있다.</u>----- ----- --.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7조(수당)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<u>제7조(수당)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정액 자문수당: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 금액)</u></p> <p>2. <u>법률 자문수당: 1건당 1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 금액)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안 제7조(수당)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논산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대한 수당(실적 추가분)을 지원하기 위함

나. 추계결과

- 법률자문 수당 증가분(매월 2건 기준)

$$200,000\text{원} \times 4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9,600\text{천원}$$

3. 작성자

참여예산실장 홍 민 기

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입	9,600	9,600	9,600	9,600	9,600	48,000
시 비	9,600	9,600	9,600	9,600	9,600	48,000
세 출	9,600	9,600	9,600	9,600	9,600	48,000
○ 고문번호사수당	9,600	9,600	9,600	9,600	9,600	48,000
재원 조달	9,600	9,600	9,600	9,600	9,600	48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9,600	9,600	9,600	9,600	48,000
	지방세	9,600	9,600	9,600	9,600	48,000
	세외수입					
	기금이자 수익금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▣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